

UCP 500 適用 以後 信用狀去來上의 爭點에 관한 事例研究

姜 元 辰*

- I. 序論
- II. 信用狀去來와 信用狀統一規則의 適用
 - 1. 信用狀統一規則의 法的地位
 - 2. UCP 500의 適用範圍
- III. 信用狀條件과 書類審査에 따른 새로운 爭點
 - 1. 運送書類의 爭點
 - 2. 保險書類의 爭點
 - 3. 換어음과 其他書類의 爭點
 - 4. 原木과 寫木書類의 認定
 - 5. 不一致書類와 書類代替
 - 6. 無書類條件
 - 7. 送達中の 書類紛失
- IV. 結論

I. 序論

信用狀去來의 準據가 되는 信用狀統一規則(UCP)은 1933년 國際商業會議所에서 制定된 이래 貿易去來慣行의 變化를 신용장거래에 受容하기 위하여 약 10년을 週期로 그동안 다섯차례의 改正이 있었다. 1993年 제5차 改正 信用狀統一規則(UCP 500)이 1994년 1월 1일부터 汎世界的으로 신용장거래에 새로이 適用되어 오면서 UCP의 適

用上의 爭點에 關하여 國際商業會議所는 刊行物番號 459와 489로 信用狀去來事例를 2卷으로 整理하여 이미 1989년과 1991년에 各各 刊行한 바 있다. 특히 UCP 500에서는 書類審査基準으로 銀行은 信用狀에 規定된 모든 書類가 文面上 信用狀條件과 一致하고 있는가의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相當한 注意를 기울여 審査하여야 하며 규정된 서류의 문면상 信用狀諸條件과의 一致性은 本 規則에 反影되어 있는 國際標準銀行慣行(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決定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처럼 書類審査基準으로 새로이 導入한 國際標準銀行慣行의 本質的 概念은 다소 抽象的이기는 하지만 서류를 審査함에 있어서 相當한 注意를 가지고 信用狀統一規則의 該當條項을 適用하되 解釋 또는 適用上的 疑問點에 關해서는 國際商業會議所의 意見이나 銀行의 慣行的 裁量權으로 신용장거래를 行할 수 있도록 하는 基準提示로 볼 수 있다.

그러나 UCP 500以後에도 信用狀去來當事者間에는 信用狀統一規則 適用上 疑問點과 問題點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關한 實證的 事例는 國際商業會議所 各國 國內委員會나 銀行 등에서 問議한 內容을 綜合하여 1995년 5월 16일 국제상업회의소 銀行委員會 信用狀專門家會議의 綜合意見으로 發表한 資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UCP 500適用 以後 信用狀去來時 發生되고 있는 各國 國內委員會 또는 銀行 등의 質疑에 대하여 國際商業會議所 銀行委員會의 結論을 내린 最近 몇가지 새로운 爭點事例를 分析하여 信用狀去來紛爭豫防 및 損失防止를 위한 素材를 제공하고자 한다.

本 研究는 UCP 500과 國際商業會議所 銀行委員會의 “Documentary Credit Queries 470/GE.6-470/GE.24”에 範圍를 限定하여 類型別로 爭點事例를 分析 考察하는데 그 초점을 밝혀둔다.

II. 信用狀去來와 信用狀統一規則의 適用

1. 信用狀統一規則의 法的地位

國際商業會議所가 制定한 信用狀統一規則은 신용장당사자간의 私的契約을 去來上의 規則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法律과 같이 그 適用을 원하는 자나 원하지 않는자를 막론하고 통일규칙에 따르게 하는 強制力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이 法的 拘束力을 갖기 위해서는 信用狀文言에 소위 信用장통일규칙이 適用된다는 準據規則(applicable rules)¹⁾을 插入하여야 한다. 이처럼 信用장통일규칙의 法規性을 認定한다 하더라도 이는 強行法規가 아니고 任意法規이기 때문에 關係당사자간에 다른 特約이 있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信用장통일규칙은 法律은 아니지만 이를 明示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當事者를 拘束하게 되는 것이다.²⁾ 따라서 信用장통일규칙의 적용은 關係은행만이 아닌 매매당사자인 輸出商(信用장수익자)이나 輸入商(信用장발행의뢰인)의 立場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準據規則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러한 信用장을 사용하는 매매당사자에게도 이 規則은 單純한 參考事項이 아니고 信用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條件의 解釋에 違反하여서는 안된다는 拘束性이 따르는 것이다.³⁾

2. UCP 500의 適用範圍

信用장통일규칙은 그 適用範圍에 대하여 “貨換信用狀統一規則(1993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번호 500)은 本 規則이 信用狀文言에 插入되어 있는 경우 모든 貨換信用狀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保證信用狀을 包含하여)에 適用할 수 있다. 信用장에 별도로 分明히 明示하지 않는 한 本 규칙은 모든 關係當事者를 拘束한다”⁴⁾라고 規定하여 貨換信用狀만이 아닌 保證信用狀도 信用狀上에 準據規則을 插入함으로써 信用장 통일규칙 適用對象이 되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信用장당사자가 私的判斷에 따라 UCP 500의 適用을 排除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信用장상에 明示하면 되는 것이다. 債

1)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2) H.C.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lications Limited, London, 1984, p.6.

3) E.P.Elling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0.p. 2.

4)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이하 UCP 500 이라고 함), Article 1.

務履行에 대한 支給確約을 하는 保證信用狀은 無貨換信用狀이기 때문에 신용장의 本質에 관련된 條項과 은행의 義務와 責任關聯條項을 除外하고 書類에 관련된 條項(제 20조- 38조)등 신용장통일규칙의 대부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신용장은 보통의 要求拂保證(demand guarantee)보다는 훨씬 폭넓은 사용으로 多目的의 金融支援手段으로 發展하여왔다.⁵⁾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은 條項에 따라서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 또는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와 같은 但書規定을 두어 신용장 거래당사자간의 任意的 合意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保險書類는 신용장에서 通貨와 同一한 通貨로 표시되는 것이 一般的이지만⁶⁾ 신용장에 별도의 明示가 있다면 同一한 通貨가 아니어도 受理된다는 뜻을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의 類型과 條件에 따라 적용가능한 조항에만 部分的으로 適用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은 보편화된 國際的인 商慣習으로 定着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法廷(courts)이나 중재판정부(arbitration tribunals)에서는 換信信用장통일규칙에 대한 準據規則의 有無에 불구하고 종종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하기도 한다.⁷⁾ 그러나 美國과 같은 국가에서는 統一商法典에 신용장에 관한 別途의 自國 法制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適用法制의 相衝問題가 있으므로 信用狀上에 準據文言을 插入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信用狀去來時 當事者の 爭點에 대해서 신용장통일규칙의 該當條項을 찾아 그 기준에 합당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신용장조건의 解釋이나 適用을 하는데 있어서 類推解釋하거나 어느 一方에게만 有利하게 적용하여 신용장의 信賴性을 해쳐서는 안되며 신용장의 書類審査基準은 明確하고 客觀性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상에 반영된 明示的인 標準慣行 및 國際商業會議所의 各國 國內委員會(national committee)에서 質疑한 爭點에 대해 國際商業會議所 銀行委員會 專門家會議의 意見(opinion)을 參照하여 信用狀을 取扱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5)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p.2.

6) UCP 500, Article 34-f.i.

7) Charles del Busto, *op. cit.*, p.2.

Ⅲ. 信用狀條件과 書類審査에 따른 새로운 爭點

1. 運送書類의 爭點

1.1 航空貨物運送狀

爭點(1)

契約運送人(Contracting Carrier)의 資格으로 航空貨物運送狀(Air Waybill)을 發行한 운송주선인은 제27조 a-i(航空運送書類의 受理 가능한 條件)⁸⁾에 의하여 運送人으로 볼 수 있는가?⁹⁾

結論

契約運送人資格으로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發行한 航空貨物運送狀 提示는 신용장에 별도 禁止하지 않고 신용장의 기타 條件에 合致된다면 제27조 a-i의 要求條件을 充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分析

UCP는 運送人을 實際運送人(Actual Carrier) 또는 契約運送人에 관하여 明示적으로 說明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國際去來規則은 이와 같은 區分을 하고 있으며¹⁰⁾ 운

8) If a Credit calls for an air transport document, bank will,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accept a document, however named, which :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by :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Any signature or authentication of the carrier must be identified as carrier. An agent signing or authenticating for the carrier must also indicate the name and the capacity of the party, i.e. carrier, on whose behalf that agent is acting.

9) Query of The Austrian National Committee; ICC Document 470/ GE.7, September 26, 1994.

10) "Actual Carrier" means any person to whom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or of part of the carriage, has been entrusted by the carrier, and includes any other person to whom such performance has been entrust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Article 1.

송인은 送貨人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라고 分明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운송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서류에 대한 多様な 參照事項에 의하여 UCP에서도 推論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운송인은 UCP500 제27조 a-i에 의하여 運送人으로서 볼 수 있다.

爭點(2)

運送人으로서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發行 및 航空貨物運送狀上에 混載業者航空貨物運送狀番號(House Air Waybill Number)또는 航空社航空貨物運送狀番號(Master Air Waybill Number)의 表示는 運送人類型書類(carrier type document)에 관한 UCP 500상의 要求條件과 一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¹¹⁾

結論

航空貨物運送狀은 提示된 대로 受理할 수 있으며 表示된 發行人의 資格과는 관계가 없다.

分析

UCP 500 제27조(항공운송서류)는 HAWB No. 또는 MAWB No.의 效果에 관하여 沈黙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이 제27조 a-i(항공운송서류의 수리가능한 조건)의 要求條件을 充足하고 運送人類型書類라고 分明히 明示하고 있는 한 HAWB No. 또는 MAWB No.를 記載하고 있다는 理由만으로 서류를 拒絶할 根據가 없다.

爭點(3)

航空貨物運送狀(Air Waybill)上에 運送人名稱表示와 署名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結論

(1) 運送人名稱은 航空貨物運送狀의 前面에 表示해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의 前面이라는 意味는 物品과 運送明細를 나타내는 面을 말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의 裏面이라는 意味는 契約條件의 明細를 나타내는 面을 말한다.

UCP 500 제27조 a-vi(航空運送書類의 受理性)에서는 銀行은 運送條件의 內容을 審査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運送人名稱은 航空화물운송장의 前面에 표

11) Query of The Austrian National Committee: ICC Document 470/ GE.7, September 26, 1994.

시되어야 하는 要求에 一致하지 않으면, 즉 運送人의 名稱이 書類裏面에 表示되더라도 書類前面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으면 銀行은 그와 같은 書類를 拒絕한다.

(2) 航空貨物運送狀이 運送人에 의해 署名된 경우, 運送人(Carrier) 이라는 말은 運送人으로서 行動하는 當事者의 資格을 밝히기 위하여 書類前面에 이미 사용된 때에는 署名欄에 다시 記載할 必要가 없다.

(3) 航空貨物運送狀이 運送人을 代理하여 署名하는 경우, 그 代理人은 署名하는 者가 누구인지, 즉 本人 또는 代理人인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중의 어느 한가지를 表示하여야 한다.

a) 運送人이라는 말이 運送人으로서 行動하는 당사자의 資格을 밝히기 위하여 航空貨物운송장 前面上에 使用되지 않았을 경우 ;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XYZ Air, carrier
(signature)

b) 運送人이라는 말이 運送人으로서 行動하는 당사자의 資格을 밝히기 위하여 航空貨物운송장 前面上에 使用된 경우 ;

ABC Co., Ltd.
as agent (or "on behalf of")
XYZ Air, carrier
(signature)

또는 ABC Co., Ltd.
as agent (or "on behalf of")
XYZ Air
(signature)

또는

또는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above named carrier
(signature)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signature)

分析

UCP 500에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은 운송주선인협회국제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 FIATA)의 案内에 따라야 할 것이다.

1.2 運送周旋人發行 運送書類

爭點

運送書類(transport documents)에 대한 UCP 500의 規定은 運送周旋人類型의 書類에도 適用할 수 있는가?¹²⁾

結論

UCP 500 규정은 두 가지의 相異한 書類類型을 包含하고 있다. 즉 제23조에서부터 28조에 定義하고 있는 運送書類¹³⁾와 제30조에 言及되고 있는 運送周旋人類型의 運送書類¹⁴⁾이다.

分析

信用狀에 別途 授權되지 않는 한 運送周旋人發行 運送書類는 運送人 또는 複合運送人으로서의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의 代理人으로서의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것을 受理 한다. 만일 운송주선인유형의 書類提示를 規定하거나 發行人의 資格을 言及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特定하지 않은 發行者 또는 書類의 內容)를 適用하되 資料內容이 提示된 其他 書類와 矛盾이 되지 않는 한 受理可能하다.

運送周旋人貨物受領證明書(Forwarding Certificate of Receipt : FCR)는 운송서류가 아니다. 만일 신용장에 授權되었다면 運送周旋人貨物運送證明書(Forwarding Certificate of Transport : FCT)는 운송서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1조와 信用狀要求條件에 合致되어야 만 한다. 신용장에 授權되었다면 混載航空貨物運送狀(House

12) Query of The Austrian National Committe: ICC Document 470/ GE.7, September 26, 1994.

13) Marine/Ocean Bill of Lading, Non-negotiable Sea Waybill,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Air Transport Document,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14) Transport Documents issued by Freight Forwarders

Air Waybill)은 運送書類이며 제27조(항공운송서류)와 신용장요구조건에 합치되어야만 한다.

또한 運送周旋人의 船貨證券(forwarder's bill of lading)은 만일 신용장에 수권되었거나, UCP 500운송서류규정에 一致되게 發行, 署名 또는 別途 認證되었다면 운송서류로 보며 이 경우 해상/海洋/複合運送形態를 規定하고 있는 關係條項과 신용장요구조건에 합치되어야만 한다.

1.3 海上船貨證券

爭點

海上船貨證券은 “揚陸港”(port of discharge), “最終目的地”(place of final destination)와 같은 欄에 “---등으로 運送을 위하여”(for transportation to, etc.)와 같이 신용장상에 言及된 港口를 반드시 記載해야만 受理可能한가?¹⁵⁾

結論

만일 信用狀上에 양륙항을 인천항으로 하도록 指示하였다면 양륙항이 부산이라고 明示된 海上船貨證券은 信用狀條件과 一致하지 아니하므로 受理不可能하다.

分析

信用狀은 港口間 船積을 위한 海洋船貨證券提示를 要求하였다. UCP 500 제23조 a-iii(항구간선화증권요구시)에 따라 銀行은 신용장상에 船積港 및 揚陸港을 記載한 서류를 受理한다.¹⁶⁾

質疑한 信用狀은 뉴질랜드 港口에서 韓國 仁川港으로 船積할 것을 要求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리가능한 유일한 운송서류는 뉴질랜드 항에서 本船積載 및 인천항에서 揚陸되는 것으로 記載된 海洋船貨證券이다.

2. 保險書類의 爭點

2.1 保險付保

15) Query of The National Bank of New Zealand Ltd.; ICC Document 470/GE.11, September 27, 1994.

16) 만일 信用狀이 港口間 船積에 適用되는 船貨證券을 要求하면 은행은 船積港과 다른 受託地 및/또는 揚陸港과 다른 最終目的地를 表示한 것을 受理한다.

爭點

保險書類는 신용장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金額(즉 送狀金額의 比率보다 많은金額)을 付保하고 發行되었을 지라도 受理可能한가?¹⁷⁾

結論

不一致에 대한 클레임은 正當하다.

分析

이 事例에서는 信用狀은 保險書類가 物品의 CIF金額에 10%를 加算한 금액에 대하여 付保(保險金額이 110%)를 하도록 하는 保險證券 또는 保險證明書 3통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受益者는 物品의 CIF金額의 110%를 精確히 付保하는 보험서류를 提示하지 않았다. 즉 보험서류는 111.17%를 付保하여 發行되었다. 이에 대하여 信用狀은 最小 또는 最大 付保比率을 제외하는 固定된 부보비율을 明示하고 있었다. 이 경우의 不一致는 信用狀條件을 違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保險證明書

爭點

保險書類가 “Certificate of Insurance”라는 題目으로 로이즈 보험업자(underwriters at Lloyd’s)의 授權에 의하여 保險仲介人會社에 의하여 발행 및 서명된 保險證明書を 요구한 경우에 受理可能한가?¹⁸⁾

結論

이와 같이 發行한 保險證明書는 受理可能하다.

分析

UCP 500 제34조 a(保險書類의 發行人)에 의하면 보험서류는 文面上 반드시 保險會社 또는 保險引受業者 또는 그 代理人에 의하여 發行 및 署名된 것으로 表示되어 있어야 한다.

17) Query of Canadian Bankers Association; ICC Document 470/ GE.9, September 20, 1994.

18) Query of United Overseas Bank, Switzerland; ICC Document 470/ GE.20, December 27, 1994.

이 事例에서 保險證明書는 Kay International Ltd.가 保險仲介人으로 로이즈보험업자를 대리하여 保險證明書를 發行하는 것으로 로이즈보험업자에 의해 授權하고 있다. 더욱이 또한 보험증명서는 로이즈보험업자의 授權下에 Kay International Ltd.가 保險을 付保하였음을 明示하고 있다.

3. 換어음과 其他書類의 爭點

3.1 信用狀發行依頼人을 支給人으로 한 換어음

爭點(1)

UCP 500에서 支給人을 信用狀發行依頼人으로 작성된 換어음을 除外시킨 理由는?19)

結論

제9조 a-iv(發行銀行의 義務)와 b-iv(確認銀行의 義務)는 신용장발행의뢰인을 支給人으로 하는 환어음 除外를 說明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서 그와 같은 환어음을 요구하는 은행을 抑制시키기 위한 趣旨로 볼 수 있다.

分析

UCP 500에서는 支給人을 信用狀發行依頼人으로 하는 것을 除外시킨다는 설명은 없다. 제9조 a-iv와 b-iv규정에서 銀行은 買入信用狀에서 發行依頼人을 支給人으로 하여 환어음을 要求하는 것을 抑制시키고 있다. 이 規定은 信用狀當事者가 아닌 者가 신용장당사자 사이에 存在하는 契約關係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狀況을 避하기 위하여 設定한 것이다. 발행은행의 義務는 제9조 a에 規定되었다. 그러므로 발행은행의 義務는 換어음支給人(發行依頼人을 意味)에 의한 支給, 引受 또는 其他 行爲에 關係 根據를 두거나 決定되어질 수 없다.

爭點(2)

제시된 환어음을 追加書類(additional document)로 간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19) Query of The Japanese National Committee; ICC Document 470/ GE.8, October 3, 1994.

가?20)

結論

買入信用狀에서 發行依頼人을 支給人으로 發行된 換어음은 追加書類로 看做하며, 은행은 信用狀의 條件을 基礎로 하여 이와 같은 書類를 點檢한다.

分析

만일 信用狀發行銀行이 발행의뢰인을 支給人으로 하는 換어음을 요구하는 신용장 발행을主張한다면 이와 같은 換어음은 일개의 追加의인 書類로 간주한다.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換어음은 발행은행자신이 사용하기위한 目的으로 하는 融通어음(accomodating draft)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신용장하에 발행은행의 支給義務를 指示하는 手段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支給 또는 引受를 요구하는 基本的(1次的) 換어음으로 取扱되는 것이 아니고, 화환신용장지시 밖에서 발행의뢰인과의 關聯性을 가지고 발행은행에 의하여 融通(貸付)을 위한 기타 서류로 取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包裝明細書上의 物品明細

爭點

包裝明細書가 物品의 明細를 表示하지 않고 商業送狀上의 明細와 一致된다는 內容의 細部明細(物品數量, 스타일 番號, 商業送狀番號)를 表示할 경우 이를 不一致로 看做할 것인가?21)

結論

不一致로 보지 않는다. 그 理由는 商業送狀과 包裝明細書의 記載內容間에 충분한 關聯性(連繫)이 있음을 把握할 수 있으면 足하기 때문이다.

分析

UCP 500 제37조 c (商業送狀上의 物品明細)에 의하면 商業送狀上의 物品明細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一致하여야 한다. 모든 書類에 있어서 물품은 신용장상의 물

20) Query of The Japanese National Committee; ICC Document 470/ GE.8, October 3, 1994.

21) Query of Wing Hang Bank Ltd., Hong Kong; ICC Document 470/ GE.6, November 15, 1994.

품명세와 矛盾되지 아니하는 一般用語로 記述할 수 있다. 또한 書類에서 包裝明細書는 UCP 500 제21조(特定하지 않는 發行者 또는 書類의 內容)²²⁾가 適用된다. 따라서 신용장상에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 포장명세서는 서류의 기재내용이 기타 明示된 書類와 矛盾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를 提示된 대로 受理한다.

4. 原本과 寫本書類의 認定

爭點(1)

原本書類(original document)로 看做되기 위하여 書類上에는 “原本”(original)이라는 말을 반드시 表示하여야 하는가?²³⁾

結論

UCP 500 제20조 b-i와 ii(原本書類의 署名方法)²⁴⁾의 方法대로 作成되었거나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書類는 書類가 原本으로 또는 適切한 方法으로 署名되어졌다면 原本서류로 銀行이 受理하여야 한다.

分析

信用狀이 제20조 c-ii(複本書類의 表示方法)²⁵⁾과 같이 充分하게 통수제시를 規定하

22) When documents other than transport documents, insurance documents and commercial invoices are called for, the Credit should stipulate by whom such documents are to be issued and their wording or data content. If the credit does not so stipulate, bank will accept such documents as presented, provided that their data content is not inconsistent with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presented.

23) Query of The Japanese National Committee; ICC Document 470/ GE.8, October 3, 1994.

24)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 will also accept as an original document(s), a document(s) produced or appearing to have been produced : i. by reprographic, automated or computerized system ; ii. as carbon copies , provided that it is marked as original and, where necessary, appears to be signed by handwriting, by facsimile signature, by perforated signature, by stamp, by symbol, or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25) ii. Credits that require multiple document(s) such as “duplicate,” “two fold,” “two copies” and the like , will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one original and the remaining number in copies except where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otherwise.

지 않았다면, 서류는 항상 原本與否를 表示해야만 한다. 서류는 貨換信用狀下에서 受理可能與否를 판단하는 자료 또는 運送情報로 이는 原本書類이어야 한다.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은 化환신용장의 著者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의 意圖가 상업송장 또는 포장명세서가 分明하게 발행되고 原本이라고 表示되어야 한다면 이와 같은 條件은 遵守되어야 한다.

爭點(2)

複寫, 自動化 또는 電算화된 시스템 또는 複寫紙에 의하여 作成된 모든 書類 또는 當該 書類가 原本書類로 看做되기 위해서는 原本(original)이라고 表示되어야 하는가?²⁶⁾

結論

複寫, 自動化 또는 電算화된 시스템 또는 複寫紙에 作成되어지는 원본서류는 특별히 原本이라는 表示를 할 必要가 있다.

分析

信用狀이 複本書類提示(presentation of multiple documents)를 要求할 경우, 이와 같은 요구는 書類自體가 UCP 500 제20조 c-ii(複本書類의 提示方法)에 別途 明示된 바와 같은 경우를 除外하고 한통의 原本과 나머지 통수를 寫本으로 제시하여도 이는 充足되어진다. 原本書類는 원래 肉筆 또는 打字된 書類를 말한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作成된 書類는 原本이라는 表示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 20조 b(原本書類와 署名方法)는 이와 같은 方法으로 作成된 서류는 原本이라는 표시가 있고 또한 必要한 경우에 署名이 되어 있다면 銀行이 複寫, 自動化 또는 電算화된 시스템 또는 複寫紙에 의해 作成되었거나 作成된 것으로 보여지는 書類를 受理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爭點(3)

海洋船貨證券 原本全通(3/3)(full set of 3/3 originals ocean bills of lading)提示를 要求하는 信用狀의 경우 全通 3通 船貨證券으로부터 두 번째 및 세 번째 선화증권이

26) Query of Bank in Liechstentein: ICC Document 470/ GE.12, October 10, 1994.

原本이라는 表示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UCP 500 제20조 b(원본서류와 서명방법)에 違反하였음을 理由로 不一致클레임이 許容될 수 있는가?²⁷⁾

結論

“Duplicate” 및 “Triplicate”라고 스탬프된 船貨證券은 原本이라는 表示가 없다는 理由로 拒絶할 수 없다.

分析

이 사례에서는 信用狀은 原本 3/3通을 要求하였다. 각기 한 通은 物品에 대한 權利를 賦與하는 意味에서 原本이다. 船貨證券은 비록 原本이라는 表示가 없더라도 要求條件에 一致된 “Duplicate” 및 “Triplicate”이란 말은 寫本 또는 UCP 500 제20조 b의 條件에 適用되는 意味가 아니다.

爭點(4)

國際道路運送條約(Convention relative au contrat de transport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 par Route : CMR)에 의한 國際道路貨物受託書의 경우에 “Copy for Sender”는 UCP 500 제28조(道路, 鐵道 또는 內水路 운송서류)가 이에 관하여 沈默하고 있는 사실과 관계없이 受理可能한 書類인가?²⁸⁾

結論

제28조에 의해 適用되는 서류는 신용장에 別途規定이 없다면 原本이어야 한다.

分析

信用狀에 별도 明示가 없다면, 要求된 모든 書類는 原本으로 發行되어야 하며 그러한 原本은 제20조 b(原本書類와 署名方法)에 規定된 대로 提示되어야 한다. 一般적으로 原本 1通은 送貨人(consignor)앞으로 發行되어지며 이는 보통 送貨人用 原本(original for consignor)이라고 표시된다²⁹⁾.

27) Query of National Bank of Kuwait: ICC Document 470/ GE.14, November 18, 1994.

28) Query of The Austrian National Committe: ICC Document 470/ GE.7, September 26, 1994.

29)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1929, Article 6 (2).

5. 不一致書類와 書類代替

爭點(1)

船貨證券上에 貨物到着通知處(notify party)를 “The China National Foreign Transportation Corporation”으로 記載하도록 要求한 신용장에서 이 名稱의 첫부분 “The”라는 單語가 脫字됨을 理由로 선화증권을 拒絕하는 것이 許容될 것인가?³⁰⁾

結論

“The”라는 單語가 漏落되었다는 事實에 根據한 銀行의 支給拒絕은 正當하지 않고 옳지 않다. 따라서 不一致가 아니다.

分析

“The”라는 單語의 漏落은 個別的인 狀況에 따라 不一致로 看做될 수 있다. 現 狀況에서 信用狀과 船貨證券間에 貨物到着通知處의 名稱에는 相異點이 없다. 두 名稱은 同一한 趣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爭點(2)

取消不能信用狀下의 受益者는 信用狀有效期日 以內에 서류를 提示할 경우 어떠한 不一致書類를 一致시키기 위하여 다른 書類로 代替시킬 수 있는가? 다만 신용장은 서류가 처음 제시할 때에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明示는 없었다. 만일 答이 贊成 쪽이라면 발행은행의 承認없이도 可能한가?³¹⁾

結論

質問에 贊成한다. 또한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라면 代替書類 또는 訂正書類가 다시 提示된다하더라도 發行銀行의 特別承認없이도 可能하다.

分析

受益者와 書類送付銀行(remitting bank)은 信用狀有效期日 以內에 書類를 提示할 경우, 서류는 UCP 500 제43조(有效期日의 制限)에 의거 許容된 期間 以內에 提示되어지고 또한 書類와 信用狀條件과 一致된다면 일치되는 서류를 提示할 可能性을 항상 가지고 있다.

30) Query of Wing Hang Bank, Ltd., Hong Kong; ICC Document 470/ GE.15, November 18, 1994.

31) Query of National Sun Industries, Minnesota; ICC Document 470/ GE.10, September 27, 1994.

6. 無書類條件

爭點

信用狀에서 “shipment to be seafreight vessel sailing to Mombasa port via Suez”라고 規定된 경우에 은행은 이와 一致시키기 위하여 선화증권에 이와 같은 履行의 表示를 要求할 權利가 있는가?³²⁾

結論

UCP 제23조 (海上/海洋船貨證券)의 要求에 一致시키기 위하여 은행은 이와 같은 表現이 信用狀과 書類自體間 必要한 것으로 解釋하여야 한다. 따라서 海上運送船舶은 Suez를 經由하여 航海될 것이라는 事實을 해상선화증권상에 明示를 要求함으로써 正當化되어질 수 있다.

分析

제13조 c(審査書類의 非指定)는 신용장이 이와 일치하게 提示되어야 할 書類에 대한 言及 없이 條件만을 包含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條件이 言及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하고 이를 無視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商業會議所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만일 그 條件이 信用狀上에 明示된 어떠한 書類에 分明하게 連繫되어 질 수 있다면 條件은 無書類條件(non-documentary conditions)으로 看做되지 않는다. 신용장이 해상선화증권을 明示한 이상 事實상 條件이 分明히 連繫되어 질 수 있는 書類로 봐야 한다. 제23조 a-ii 및 a-iii(受理可能한 書類條件)은 선화증권이 제23조의 해상/해양선화증권에서 요구된 서류의 一致性을 充足시키는 어떠한 明細의 表示를 要求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화증권은 그 밖의 資料中에 船積港, 揚陸港 및 船積日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7. 送達中の 書類紛失

爭點

32) Query of Preussag Handel GmbH, Germany, ICC Document 470/ GE.16, November 28, 1994.

書類가 指定銀行(nominated bank)과 確認銀行(confirming bank)간 送達中에 紛失할 경우에 확인은행의 立場은 어떠한가?³³⁾

結論

비록 書類가 指定銀行과 確認銀行間 送達中에 紛失되더라도 확인은행은 信用狀下에서 明白한 確約에 의한 지급이행을 행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

分析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가 신용장유효기일 이내에 또한 適切한 方法으로 UCP 500의 제43조 a(유효기일의 제한)의 期間에 指定銀行에 提示될 때 信用狀은 發行銀行과 確認銀行 모두의 明白한 確約을 하는 것으로 본다.

受益者가 信用狀에서 指定銀行에게 一致하는 書類提示를 適期에 완료하였을 때는 後續的인 書類紛失責任은 더이상 없다. 서류가 지정은행에 의하여 확인은행의 確약하에 지급받기 위하여 확인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의하여 指示된 當事者에게 송부될 경우 및 그 서류가 送達중 紛失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送付方式에 대하여 發行銀行 또는 確認銀行으로부터 어떤 指示가 있다면 서류를 受領하지 못함으로 인한 支給上의 위험은 確認銀行에게 移轉된다. 또한 發行銀行은 發行은행의 수권과 요구에 따라 義務를 지고,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要請과 指示에 따라 行動하기 때문에 그 危險은 確認銀行으로부터 發行銀行에게, 發行銀行으로부터 發行依頼人에게 順次的으로 移轉한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銀行은 어떠한 通信, 書信 또는 書類의 送達中에 遲延 및/또는 紛失로 인하여 발생하는 結果에 대하여, 또는 모든 電信의 送達中에 발생하는 遲延, 毀損 또는 其他 誤謬에 대하여 아무런 義務나 責任을 지지아니한다”라고 規定한 UCP 500 제16조(通信送達에 대한 免責)를 注目할 일이다.

IV. 結論

國際商業會議所 各國 國內委員會와 銀行 등의 質疑에서 살펴보았듯이 現行 UCP

33) Query of Mid-Med Bank, Malta: ICC Document 470/ GE.13, November 28, 1994.

500을 信用狀去來에 適用하면서도 새로운 疑問點은 繼續的으로 發生하고 있다. 信用狀去來上의 主要 爭點에 대하여 類型別로 分析하여 考察한 結果 특히 留意하여야 할 事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航空運送書類는 信用狀에 別도의 明示가 없는한 발행인의 資格(예: 航空運送周旋人, 混載業者)과는 관계 없이 受理된다.

2. 航空貨物運送狀의 運送人名稱은 運送狀 前面에 表示하여야 하며, 이 경우 發行者 署名欄에는 운송인명칭을 다시 記載할 必要가 없다. 다만 운송인을 代理하여 署名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明示하여야 한다.

3. UCP 500에 反影된 運送書類는 海上/海洋船貨證券, 非流通海上貨物運送狀, 傭船契約附船貨證券, 複合運送書類, 航空運送書類, 鐵道.道路 또는 內水路運送書類와 같은 一般的인 운송서류(제23조-28조)와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運送周旋人發行運送書類의 두가지 類型의 운송서류로 區分된다. 운송주선인발행운송서류는 運送人 또는 複合運送人으로서의 운송주선인 또는 複합운송인으로서의 運送周旋人의 名稱을 明示하고 운송인 또는 複합운송인으로서의 運送周旋人에 의하여 發行되었거나, 운송인 또는 複合運送人의 名칭을 명시하고 운송인 또는 複합운송인을 代理하는 指定代理人으로서의 운송주선인이 發行한 경우에만 受理한다. 따라서 운송주선인화물수령증명서(FCR) 또는 운송주선인화물운송증명서(FCT)는 運送書類가 아니므로 신용장에 特別히 授權되지 않는 한 受理하지 아니한다.

4. 港口間 船積에 適用되는 船貨證券을 要求하면 船積港과 다른 受託地 및 揚陸港과 다른 最終目的地를 表示하고 있는 運送書類를 受理한다. 다만 信用狀에서 特定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保險書類上의 保險金額은 비록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액보다 많이 付保하더라도 不一致로 看做된다. 또한 보험서류는 반드시 保險會社 또는 保險引受業者 또는 保險會社나 保險引受業者의 代理人에 의하여 發行 및 署名된 것이어야 한다.

6. 銀行은 根據契約에 存在하는 狀況을 피하기 위하여 換어음支給人을 신용장발행의뢰인으로 하는 換어음요구를 抑制시키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換어음이 提示되었을 경우에는 融通어음(accomodating draft)과 같은 目的으로 봐서 追加的인 書類로 看做한다.

7. 包裝明細書는 特定하지 않는 發行者 또는 書類의 內容(제21조)에 해당되기 때문

에 신용장에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상업송장 등 기타 명시된 서류와 기재내용의 聯關性을 찾을 수 있다면 提示된 대로 受理한다.

8. 信用狀上에 要求書類의 通數提示를 規定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原本與否를 表示하여 提示하여야 하며, 또한 複寫, 自動化 또는 電算화된 시스템 또는 複寫紙에 作成되는 書類는 특별히 原本이라는 表示를 하여야 原本으로 認定된다.

9. 船貨證券 原本 全通(3/3)을 要求할 경우 船貨證券上에 스탬프된 “Duplicate”, “Triplicate”는 寫本이 아니고 선화증권 두번째 원본, 세번째 原本을 意味한다.

10. 信用狀條件과 不一致한 書類를 信用狀有效期日內에 代替 또는 訂正書類로 提示하는 것은 發行銀行의 承認없어도 可能하다.

11. 信用狀이 提示書類에 대한 言及없이 條件만을 包含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용장은 信用狀條件을 言及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하고 이를 無視한다. 다만 信用狀條件으로 보아 어떠한 서류에 連繫되어질 수 있는 것은 無書類條件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 指定銀行과 確認銀行間의 書類送達中 紛失되었다면 書類를 受領함이 없이 支給함에 따르는 危險은 確認銀行에게 移轉된다. 結果的으로는 그 危險은 確認銀行으로부터 發行銀行에, 발행은행으로부터 發行依頼人에게 順次的으로 移轉된다.

信用狀去來上 關係當事者間의 爭點은 信用狀統一規則上의 明示的인 條項에서 모든 解答을 구하기는 事實上 어렵다.

信用狀거래에 따른 紛爭豫防 및 損失을 防止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對策을 提示한다.

1. 銀行은 現行 信用狀統一規則上에 明示된 銀行慣行 및 國際商業會議所의 質疑 및 應答事例 등을 참조하여 이른바 國際標準銀行慣行에 따라 客觀的인 立場에서 正直하게 信用狀과 書類를 심사하여 支給履行與否를 判斷하여야 한다.

2. 信用狀受益者는 자신이 提示하는 商業送狀 등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좀 귀찮다하더라도 신용장조건에 嚴格하게 一致되도록 提示하여 支給拒絕(unpaid)의 빌미를 提供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信用狀關係當事者는 信用狀은 條件附 支給確約이며 매매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나 은행과 고객간의 去來約定書와 같은 이른바 根據契約(underlying contract)과는 別개의 거래이며 오직 書類文面만을 근거로 代金支給을 履行한다는 信用狀의 本質的인

特性을 理解하여야 한다.

4. 信用狀去來는 신용장의 본질적 특성인 獨立抽象性의 原則 適用慣行을 逆利用하여 詐欺行爲가 발생될 可能性도 常存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거래선에 대한 信用狀態를 미리 파악하고, 船積前에 現地에서의 직접 물품검사 및 船積事實을 確認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國際적으로 公認된 檢査證提示를 要求하여 去來上 또는 書類上의 詐欺에 對處하여야 하며, 신용장을 過信하지 말고 신용장 수령시에 그 眞僞 與否를 잘 검토함은 물론 信用危險地域에 있는 去來先과 商去來를 할 경우에는 確認信用狀을 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參 考 文 獻〉

- 姜 元 辰, 「信用狀論」, 增補版, 博英社, 1995.
- Busto, Charles del,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Ellinger E.P.,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0
- Gutteridge H.C. and Megrah Maurice,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89.
- , *Guide to Documintary Credit Operation*, ICC Publishing S.A., 1985.
- , *More Case Studies on Cocumentaty Credits*, ICC Publishing S.A.,

1991.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 Document, 470/330, April 14, 1978.

-----, Documents, 470/371, 470/373, December 9, 1980.

-----, Document, 470/425, January 17, 1984.

-----, Document, 470/-37/4, May 27, 1991.

-----, Document, 470-37/37, December, 6, 1991.

-----, Document, 470/727, May 16, 1995.

Matti, Kurkela, *Letter of Credi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Ocean Publications, Inc., 1950

Roseblith Robert M., "Current Development Letter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21, Fall, 1988.

Ventris, *Bankers' Documentary Credits*, 3r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0.